

자체감사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7.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한다.) 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5.>

- ①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 <신설 2013.11.15.>
- ②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 사항 <신설 2013.11.15.>
- ③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신설 2013.11.15.>

제3조(감사의 종류) ① 종합감사는 감사를 받는 대상 부서 및 학부(학과)(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② 부분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 사항 및 취약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기강감사는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④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가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종합감사의 주기 등)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부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 1. 기획조정실, 교학처, 입학홍보처, 산학협력처, 총무처, 국제교류처 <개정 2014.3.1., 2015.8.31., 2016.7.28.>
- 2. 산학협력단, 디지털정보센터, 전산정보센터,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 3. 전체 학부(학과)
-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외에 실시하는 감사의 주기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등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시행 15일 이전에 감사대상, 감사 실시기간, 감사목적, 감사반 구성, 기타 감사에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2015.8.31., 2016.7.28.>

제6조(감사실시의 통지) ① 기획조정실장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 상 부득이할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31., 2016.7.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통지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 ① 기획조정실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1., 2016.7.28.>

② 기획조정실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감사반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6.7.28.>

③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6.7.28.>

제8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 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및 감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인,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③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각 전담자에게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분석·정리하도록 하여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감사 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참관인제의 운영)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서 및 학부(학과)에서 추천한 감사 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감사 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6.7.28.>

제11조(전문가에 의한 관련서류 등의 검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수분야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

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의 실시

제12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운영방침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감사반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서의 요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문답서의 작성)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 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질문서의 발부 등)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7조(감사결과의 보고) 기획조정실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2015.8.31., 2016.7.28.>

1. 삭제 <2013.11.15.>
2. 삭제 <2013.11.15.>
3. 삭제 <2013.11.15.>
4. 삭제 <2013.11.15.>
5. 삭제 <2013.11.15.>
6. 삭제 <2013.11.15.>
7. 삭제 <2013.11.15.>

제18조(감사결과의 처분요구)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징계·경고·주의·변상조치, 시정·개선·통보 또는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총장에게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고발)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교직원 등은 제18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1.>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직권재심의) 기획조정실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2015.8.31., 2016.7.28.>

제22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와 총장의 위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

② 삭제 <2013.7.1.>

③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소속 직원과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2015.8.31., 2016.7.2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7.1., 2015.8.31., 2016.7.28.>

⑤ 삭제 <2013.7.1.>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7.1.>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3.7.1.>

1.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위임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3.7.1.>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감사대상 부서의 장, 감사반장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3.7.1.>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끝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6.7.28.>

제24조(표창 등의 추천) 기획조정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력의 향상, 예산 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6.7.28.>

제25조 삭제 <2013.7.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6조(감사실시의 통지) ①항, 제7조(감사반의 편성) ①항, ②항, ③항, 제10조(감사 참관인제의 운영), 제17조(감사결과보고), 제21조(직권 재심의), 제22조(감사위원회) ③항, ④항, 제23조(조치결과보고), 제24조(표창 등의 추천)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홍보처장'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6조(감사실시의 통지) ①항, 제7조(감사반의 편성) ①항, ②항, ③항, 제10조(감사 참관인제의 운영), 제17조(감사결과보고), 제21조(직권 재심의), 제22조(감사위원회) ③항, ④항, 제23조(조치결과보고), 제24조(표창 등의 추천)의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기획처장'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4조(종합감사의 주기 등) ①항,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6조(감사실시의 통지) ①항, 제7조(감사반의 편성) ①항, ②항, ③항, 제10조(감사 참관인제의 운영), 제17조(감사결과에의 보고), 제21조(직권재심의), 제22조(감사위원회)③항, ④항, 제23조(조치결과에의 보고), 제24조(표창 등의 추천)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한다.